

부산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1가단3007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피 고 1.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2. 주식회사 C

변 론 종 결 2021. 5. 18.

판 결 선 고 2021. 6. 15.

주 문

1. 가. D와 피고 A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A 주식회사는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9. 11. 4. 접수제1637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D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C는 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20. 1. 10. 접수제58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E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함)의 대표이사 D의 보증의뢰에 따라 소외 회사가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아래<표1>기재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함)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서를 F은행에게 발급하였다. D는 원고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생하게 될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하는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순 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인	보증기한	대출과목	보증상대처
1	G	128,000,000	2017. 2. 20.	2019. 9. 19.	일반자금대출	F 은행 무계동지점

나. 소외 회사는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가지고 아래<표2>기재와 같이 F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대출기관(취급점)	대출일자	대출금액
1	G	128,000,000	F 은행 무계동지점	2017. 2. 24.	160,000,000

다. 소외 회사는 2019. 9. 24.경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함)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20. 2. 14. 아래<표3>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F은행에 72,932,191원(=원금 7,200만 원 + 이자 932,191원)을 변제하였다.

순번	보증번호	대위변제일자	원금	이자	구상합계액
1	G	2020. 2. 14.	72,000,000	932,191	72,932,191
합계			72,000,000	932,191	72,932,191

라.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고, 그 이율은 아래<표4>기재와 같다.

기 간	이율(연)	비 고
대위변제일부터 - 현재까지	8%	금리자율화에 따른 원고 소정율

마.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및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신용보증약정 제3조에 의하면 보증받은 자가 보증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고 소정의 율과 계산방법에 의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율과 위약금은 아래<표5>기재와 같다.

순번	보증번호	발생금액	대상기간	일수	요율	미수금액
1	G	80,000,000	2019.09.20.-2019.11.06.	48	2.0	210,410
		72,000,000	2019.11.07.-2020.02.13.	99	2.0	390,570
합계						600,980

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제10조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에 대해서도 소외 회사가 이를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은 1,052,776원이다.

사. D는 2019. 11. 4.경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함)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19. 11. 4.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9. 11. 4. 접수 제163768호로)를 마쳐주었고, 2020. 1. 10.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1. 1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20. 1. 10. 접수 제5837호)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두 개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함).

아. 2019. 11. 4. 및 2020. 1. 10. 당시 D의 재산 상태는 아래 목록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적극재산 목록]

순번	내용	금액(원)	참조
1	목록 1(울산 울주군 H)	201,700,000	2021.01.19. I 회신
2	목록 2(위 J)	52,360,000	
3	경주시 K 전 549평	100,858,400 ¹⁾	갑 8-1,2
	합계금	354,918,400	
이상 2021.01.25. 울산광역시 북구청 회신			

[소극재산 목록]

순번	채권자	내용	금액(원)	참조
1	F 은행	2017.02.20. 일반자금대출잔액	72,932,191	갑 3
2	I 조합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90,000,000	2021.01.19. I 회신
3	L (지역) 범서천상	2014.10.28. 대출	20,000,000	2021.03.10. M 회신 7,8/17면
4	L (지역) 중흥산연암	2008.10.10. 대출	70,000,000	
5		2009.09.30. 대출	65,000,000	
6	N 카드	2019.01.10. 대출	1,500,000	
7		2019.03.30. 대출	4,323,000	
8	L (지역) 상호본부총괄	2019.09.30. 대출	1,600,000	
9	O 카드	2019.08.22. 대출	3,825,000	갑 8
10	F 은행	2019.11.06.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116,600,000	
		합계금	545,780,191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내지 갑제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기초적 법률관계의 내용,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그 변화내용,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채권이 발생하는 빈도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살피건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F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한

날은 2020. 2. 14.이므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함)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9. 11. 4. 및 2020. 2. 10. 당시에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음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한 2019. 9. 24. 이후에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2020. 2. 14. 원고가 F은행에 소외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무자력

D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상태였음은 위 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D는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위 처분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비롯한 D의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악의도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소외 회사에 대한 레미콘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가제1호증 내지 을가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C는, 소외 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공해주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D가 채무초과상태이라거나 이 사건 부동산이 D의 유일한 재산인지는 몰랐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을나제1호증 내지 을나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D와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19. 11. 4. 접수제1637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는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와 2020. 1. 10. 접수제583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무효라는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천중호

부동산의 표시

1. 울산 울주군 H 전 2,017㎡
2. 울산 울주군 J 전 476㎡ -끝-